

# 1 비상장주식 투자시 회사정보와 투자권유자 확인 요망

◇ 최근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허위나 과장된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

## ■ 추진배경

- 비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,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의무가 제한되어 회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
- 비상장주식은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참여자 수 등이 제한되어 있어 상장주식보다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

## ■ 주요내용

- DART에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
  -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, [dart.fss.or.kr](http://dart.fss.or.kr))에서 회사명을 검색하면 사업보고서, 증권신고서(혹은 소액공모공시서류) 등의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
-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자에 대하여 확인
  -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(FINE, [fine.fss.or.kr](http://fine.fss.or.kr))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, 한국벤처캐피탈협회([www.kvca.or.kr](http://www.kvca.or.kr))에서 회원사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- 아래 사항에 해당되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즉시 제보
  - DART에서 증권신고서(혹은 소액공모공시서류)가 제출여부 확인
  - 투자권유 회사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(FINE)에 검색되지 않음

## ■ 협조사항

- 구·군 홈페이지 팝업창, 소식지(구보, 반상회보) 게재 등 홍보

## 참고

## 위법한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례

※ 아래 사례는 공시조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색하였습니다.

### 1 다단계 판매조직의 비상장주식 판매 사례

- 다단계 주식판매조직인 A그룹은 약 5,000억원에 상당하는 비상장회사 주식들을 소속 법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.
- 이들은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임원의 보유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는 방법 등으로 주식을 확보한 후 전화,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하였으나,  
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아 해당 판매법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받았으며, 그룹 대표 등은 법원에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급심이 진행중입니다.
- 확인 결과, 해당 판매법인들은 ‘OO파트너스’, ‘OO인베스트먼트’, ‘OO벤처투자’ 등 금융회사, 전문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였고,  
투자기업 발굴, 판매 등을 분담하는 등 실제 금융회사와 유사한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, 금융당국의 인가 등을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습니다.

### 2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다수 투자자에게 주식을 판매한 사례

- 제약·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.
- 다수의 투자자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주식을 판매하면서도 “**현재 개발중인 제품은 혁신적인 항암제로서 FDA 승인 예정이며, 곧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**”라는 말을 강조하였지만, 실제로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. 또한 회사도 이러한 주식 판매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.
- 결과적으로 회사는 영업손실을 시현하는 등 투자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투자자들은 이러한 투자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큰 투자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.